## 한-인도 CEPA 원산지 절차 요약

구분			한·인도 CEPA
발효일자			2010. 1. 1.
협정국			인도
원		발급주체	한국 - 세관, 상공회의소
산			인도 - 인도수출검사위원회
지	서식		양국 간 통일증명서식(KIN-CEPA 양식)
증	유효기간		발급일로부터 12월
명	제	출면제기준	미화 1,000불 이하
서		참고사항	소급발급 시 6란(Remarks) 에 "Issued Retrospectively"표기
원산지결정기준			WO : 완전생산물품
(부호)			CTSH+RVC 35%: 6단위 세번변경+부가가치 35%
			품목별 원산지기준(PSR) - 995개 품목
			CC/CTH/CTSH: 세번변경
			CC/CTHorRVCx% : 세번변경 or 부가가치x%
			CC/CTH+RVCx%: 세번변경 + 부가가치x%
			Specific Process : 특수공정 수행물품
			Others : 기타
			OP: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
부가		계산방법	공제법(BD)
가치	부가가치기준		25 ~ 50%
계산 방법	기준가격		FOB
0 8	비고		일반기준 : CTSH+RVC 35%
역	품목		108개 (HS 6단위)
외	지역		개성공단
가	가공비		역외 부가가치 40% 이하
공			역내산 재료비 60% 이상
제3국발행시송장		항시송장	원산지증명서 14번란 third country invoicing(Name, Address, Country) 에 체크 표시
원	검	검증방법	(원칙) 간접,(예외) 직접
산	증	검증주체	수출국 세관(간접), 수입국 세관(직접)
지	회	회신기간	3개월(간접), 30일 또는 합의일(직접)
검	신	회신주체	수출국 세관(간접), 수출자 또는 생산자(직접)
증		미회신조치	협정관세 적용 제한
근거조항			제4.11조, 제4.12조

<sup>■</sup> CEPA란?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

<sup>-</sup> 상품교역, 서비스교역, 투자,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